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1696호 2026. 10. 29.(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1
○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규 칙

○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14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16

안내

○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정기)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동구소식 → 고시/공고 → 동구공보

회람								

발행 :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73호

울산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야간관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대(이하 "야간시간대"라 한다)에 관광명소, 관광시설, 문화·예술·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체험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및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거나 관광객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은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사업 대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야간관광 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야간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특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2. 야간관광 코스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3. 야간관광과 지역상권을 연계한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4. 야간관광을 위한 관광동선 및 편의환경 조성
5. 야간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야간관광사업을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동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야간시간대에도 활용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야간관광 특화사업의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74호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백사장”을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행위로서 백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항”으로,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를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로,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을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여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야영용품, 취사용품, 레저용품 및 그 밖의 용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거 대상 물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75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이 필요한”으로,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돌봄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상자에게 우리 지역”을 “대상자가 지역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을 “장애인으로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을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반여건”을 “제반 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항이 포함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를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으로, “지역계획 및”을 “지역계획,”으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연계하여야”를 “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등”을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별 지원계획”을 “개인별지원계획”으로, “안내하여야”를 “안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를 “조사·판정하여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별 지원계획”을 “개인별지원계획”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인별 지원계획”을 “개인별지원계획”으로, “관련 기관”을 “관련기관”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원 회의”를 “통합지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동구 지역”을 “구 관할”로 한다.

제9조 중 “주민들”을 “주민”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담조직 설치)”를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 담당 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제21조의”를 “법 제21조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 조직”을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관련 기관”을 각각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 중”을 “위촉직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장으로 하고,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통합지원업무”를 “통합지원 업무”로 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단서 중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관련 기관·참여”를 “관련기관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7조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를 “이용해서는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규정(안 제1조)

나.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11조제1항)

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참여 범위 확대(안 제12조제4항제4호)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76호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영 제5호제1항제5호”를 “영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을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외국어를 병기하는”을 “외국어 병기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을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서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춘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안점점검”을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를 “허가가”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별지 13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취하 또는 반려한”을 “철회한”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울산광역시 동구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설치하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수수료의 반환 및 감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수료 부과·징수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및 감면 규정 신설(안 제28조)

-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나. 현행 조례상 불명확한 표현 및 오기정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및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1.5.18.공포, '22.5.19.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삭제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8개 조항) 삭제

나. 삭제 조항 관련 서식(8종) 삭제

다. 기타 용어 정비 및 '산하기관' 개념 명확화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40호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아직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례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오래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회 이상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의 위원 자격 제한 규정 삭제(안 제 18조제1항)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문구 등 정비

3.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자치행정과
- 팩스번호: 052-209-3169
- 전자우편: elven3p@korea.kr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자치행정과(052-209-31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시행규칙명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를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로 한다.

제4조 중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을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사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 또는”으로, “추천으로”를 “추천을 통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임된”을 “선정된”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 관리하여야”를 “작성・관리해야”로 한다.

1. 구・동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을 통한 공개모집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인 사람은 강사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제1호 중 “국가, 공인기관,”을 “국가·공인기관 또는”으로,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을 “전문지식이 있거나”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을 “해당 연도 중”으로, “해당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를 “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을 “각각”으로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는 동장이 위촉하고,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말 수강생 만족도, 수강인원 및 강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해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래하기”를 “끝나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사로서 품위손상, 출강저조”를 “강사의 품위 손상, 출강 부진”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을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밖에 자치센터”를 “그 밖에 자치센터의”로 한다.

제11조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존중·이행하여야”를 “존중·이행해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별지 제8호 서식인”을 “별지 제8호서식의”로,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얻어야”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대여하지 않으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변경 또는 이미 사용한 것을 제한·정지시

킬”을 “자치센터 시설 등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사항을 취소·변경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줄 때”를 “주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을 “종교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를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취지, 목적,”을 “취지·목적 및”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 된 때”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교부한다”를 “발급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용료를 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을 “자치센터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으로,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를 “징수결의를 거쳐”로, “납입하여야”를 “납입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좌(이하“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야”를 “계좌에 입금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시설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액 반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반환하며,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출하여야”를 “지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 후 주

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프로그램 수강 어린이 제외)”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어린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치적·영리목적의 추구,”를 “정치적·영리적 목적을 추구하거나”로, “판단되는”을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어려움을 주거나 선량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을 “지장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주는”으로 한다.

1. 감염성 질환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제1항 중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 내”를 “실비 및 강사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의 범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14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 의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1항의 각 호의 방법으로”를 “제1항에 따라”로, “아래와 같이”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2항 1호 및 2호의 추

천에 의한 사람 중에서”를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을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 위·해촉 사유가 발생하는”을 “등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2.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별지 제17호서식의 추천서

제19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공정한 선정을”을 “주민자치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내 기관·단체와”를 “제2항에 따른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관내 기관·단체 및”으로, “덕망과 식견이 있고 주민자치에 대한”을 “주민자치에 관한”으로,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사람으로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동장이”를 “동장은”으로, “교부하여야 하며”를 “발급하고”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해촉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해촉 관리대장”을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해촉 관리대장”으로, “작성·관리하여야”를 “작성·관리해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제21조의 규정”을 “제21조”로,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을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으로, “장소 및부의안건”을 “장소 및 안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 중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밖에”를 “제1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무와 그 밖의 위원회”로, “보유”를 “비치”로, “운용”을 “관리 및 사용”으로 한다.

제24조 중 “규칙”을 “이 규칙”으로, “것 외의”를 “사항 외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5호서식, 제19호서식,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

(접수번호 :)

사 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HP)		
	E-mail		직업			

자원봉사 내 역	활동분야	주민자치센터(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운영 보조)		
	봉사 가능 기간 및 요일	. . . ~ . . . (가능요일 : 월 화 수 목 금)	봉사희망시간	오전: 00:00~00:00 오후: 00:00~00:00
관련교육 이수경력	교육기간	교 육 명		주 관 기 관
자원봉사 활동경력	봉사기간	봉 사 내 용		봉 사 기 관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신청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연락처
   - 선택: 사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직업, 교육이수 및 자원봉사 활동경력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자원봉사 활동 종료 후 1년까지
4.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원봉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택항목은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필수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신청서

일련번호: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성 별		전 화 번 호	
	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사용목적				
시 설 사 용	기본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원	납부일	년 월 일
비 고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절 취 선----------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성 명 (단체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사용료	원	납 부 일 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 ○○동장

※ 반환규정: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사용료의 환불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환불 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액 반환한다.

※ 유의사항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하고 승인 받은 시설은 동장의 동의없이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뒷면)

서 약 서

○○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함에 있어 본인(단체)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동장의 시설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 승인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

주 소:

성 명: (서명/인)

울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일련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화번호	
	주 소			
프로그램명				
수강기간	20 . . . ~ 20 . . . (매주 요일 00:00 ~ 00:00)			
수 강 료	원	납 부 일	년 월 일	
비 고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인)

울산광역시 동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절 취 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증

일련번호:

프로그램명			
성 명		연락처	
주 소			
수 강 료			
수강기간	20 . . . ~ 20 . . . (매주 요일 00:00 ~ 00:00)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동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 반환규정: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반환하고,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수강료(사용료) 반환 신청서

일련번호:

신청인	성 명(단체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주 소		
반환신청사유			
납 부 액			
반환신청액			
입 금 계 좌 (본인 또는 부모명의)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강(사용)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동구 ○○동장 귀하 (사용료의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수강료의 경우)

※ 처리기한 : 3일 이내 계좌이체로 반환

[별지 제12호서식]

○○동 주민자치위원회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운영장소 :

◦ 운영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외 개 교실

◦ 프로그램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단위 : 천원)

전기이월액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 수강료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번	프로그램 명	수입금액	산출내역	비 고
	계		수강인원×수강료	

◦ 수강료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지출내역	지출금액	산출내역	비 고
	계			
	강사료 등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별지 제1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년도	결재	간사(회계)	부위원장	위원장
	협조	동장		
아래와 같이 지출을 결의함.				
결 의	년 월 일			
지출부 등재	년 월 일			
지출전표	년 월 일			
금 원 (원)				
채주		상기 금액을 청구(영수)함. 년 월 일 ○ ○ ○ (인)		
지출항목	세 부 사 항		비 고	
계				
특기사항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Ⅰ. 총평

Ⅱ. 분야별 운영상황

1.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현황

(단위: 천원/명)

프로그램	운영기간	운영시간	수강료(월)	수강연인원	비 고

2. 계층별 이용 현황 또는 참여 연인원 현황

(단위 : 명)

프로그램	계	주 부	학생	직장인	노인	기타

3. 주민자치센터 이용인원(일 평균)

(단위: 명)

구분	1일평균 이용주민	성별		이용대상별				
		남	여	학생	성인 남성	성인 여성	노인	기타
인원수								

4. 예산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집 행 액					
	교부액	상반기 집행액	하반기 집행액	잔 액	월	월	월	월	월	월
계										

5.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이용시설명	시설사용료 징수현황							비고
	계	월	월	월	월	월	월	

6. 수강료 징수현황

(단위: 천원)

프로그램명	수강료등수납및지출현황														
	계			월		월		월		월		월		월	
	수입	지출	잔액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적립액 현황

(단위: 천원)

총계	전반기 이월금	적립액						
		소계	월	월	월	월	월	월

8.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프로그램명	수강인원	강사료			비고
		계	자부담	예산지원	

9. 주민자치위원 구성 운영

가. 구성현황

(단위 : 명)

계	성 별		유 형 별		비 고
	남	여	위 원	고 문	

【직종별】

계	자영업	통반장	직능단체	주부	회사원	전문가	지방의원	비영리민간단체	농축산업	기타

【분야별】

(단위 : 명)

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관 계	시민·사회단체	기 타

나. 운영실적

(회/명)

계	회의개최	교육·토론	단합대회	기 타

다. 회의개최실적

회 의 개 최		실 적	비고
월별	인원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형

(단위 : 건)

총 계	주 민 자 치	문 화 여 가	지 역 복 지	주 민 편 익	시 민 교 육	지역사회 진 흥	기 타

11. 자원봉사자 활용 및 민간단체 참여

○ 자원봉사자 활용

참 여 인원수	성 별		분 야 별			자원봉사자 급식비지급
	남	여	강 사	관리운영	기 타	

○ 민간단체참여

프로그램 위탁운영	자치위원참여	의견제출자문	기타	비고

12.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계	마을(복지)회관	아파트관리소	경로당	기 타

13. 야간 및 주말·공휴일 운영프로그램 현황

계	야 간	주말·공휴일	비 고

14.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교육·홍보

○ 공무원 교육

계	횟 수	인 원

○ 주민홍보

계 (회/매)	리플릿 팸플릿 (회/매)	전 단 (회/매)	홍보책자 (회/매)	반상회보 구정소식지 (회/매)	언론매체 (회)	기 타 (회/매)

Ⅲ. 주요시책 추진상황

Ⅳ. 문제점 및 건의사항

Ⅴ. 수범사례

〔별지 제19호서식〕

해 촉 통 보 서

○ ○ ○ 귀하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귀하를 울산광역시 동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동구 ○○동장 (직인)

[별지 제22호서식]

제 회 ○○동 주민자치위원회(정기회의, 임시회의)
회 의 록

□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 심의안건
1.

□ 회의내용
○ 개회시간 :
○ 발언위원
- 사회자 :
- 위원장 :
- 위 원 :
- 동 장 :
○ 폐회시간 :

□ 심의·의결 결과
1. 안건명: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보류

□ 참석위원 : 명
○○○, ○○○, ○○○, ○○○, ○○○, ○○○, ○○○
□ 불참위원 : 명
○○○, ○○○, ○○○, ○○○, ○○○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 ○ ○ (서명)
○ 부위원장 ○ ○ ○ (서명)
○ 간 사 ○ ○ ○ (서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
제4조(운영사무 분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사무 분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 ---------- ----------.
제6조(자원봉사자) ① (생 략)	제6조(자원봉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수행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활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강사의 모집 등) ① 프로그램 강사는 제8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동장이 선정하고,	제7조(강사의 모집 등) ①---------- ----------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위원회----------. 강사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 게시, 구·동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공개모집	1. 구·동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을 통한 공개모집
2. 강좌 분야별 전문기관, 협회 등의 추천으로 모집	2. --------- 전문기관 또는 --- 추천을 통한 ----------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인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제출해야 -------.
③ 선임된 강사는 동장과 강의 협약을 체결하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 ---------- 제출해야 ----.
④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 관리카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 ----- 별지 제6호서식---------- 작성·관리해야 ----.
제8조(자격요건) ①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인 사람은 강사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자격요건)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인 사람은 강사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1. 국가·공인기관 또는 ---------- 분야의

소지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 전문지식이 있거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강사 위촉)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는 동장이 위촉하고 협약기간은 1년(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매년 말 수강생 만족도, 수강인원, 강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위촉)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는 동장이 위촉하고, 협약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매년 말 수강생 만족도, 수강인원 및 강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해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정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해당 연도 중---------- -- 해당 연도 ---------- 하되---------- ----------.
③ 동장과 강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 ---------- 각각 ---------.
제10조(강사 협약 취소)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강사 협약 취소) ---------- 끝나기 ---------- ----------.
1.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1. ---------- 그 밖의 ----------

	-
2. 위원회 심의로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	2. 위원회의 ----------
3. 강사로서 품위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강사의 품위 손상, 출강 부진---------- ----------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
4. 그밖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치센터의 ----------
제11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이행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의무) ---------- 위원회---------- 존중·이행해야 ---------- ---------- ---------- -------- 노력해야 -----.
제12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치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인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사용신청 등) ① ---------- 따라 ---------- ------ 별지 제8호서식의 ----------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대여하지 않으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변경 또는 이미	② ---------- ---------- 자치센터 시설 등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이미 승인한 사항을 취소·변경할

사용한 것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단서 신설>	----------. 다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줄 때	1. ---------- 주는 경우
2.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 종교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
3. 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 ----------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된 때	4. 그 밖---------- 취지·목적 및 -----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 ------- 별지 제9호서식---------- 제출해야 ----------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사용료 등) ① ----------.

1. 시설사용자는 사용료를 자치센터 시설사용 승인 후 사용 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 자치센터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는 ---------- -------- 징수결의를 거쳐 ---------- -- 납입해야 ----.
2. 수강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가 징수하며,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2. ---------- ---------- ---------- 계좌에 입금해야 ----------.
3.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 출납부에 작성하여야 한다.	3. ---------- ---------- 작성해야 -----.
② 사용료 등의 환불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경우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환불 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액 환불하고, 수강료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해당 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시설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액 반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반환하며,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수강료의 집행) ①·② (생략)	제14조(수강료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 ---------- ------- 지출해야 ----.
④ 수강료 중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비율은 동장과 협의 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④ ---------- -------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제15조(이용자의 안전보호) 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치센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안전보호)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1. 감염성 질환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 어린이 제외)	3. ----------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어린이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치적·영리목적의 추구,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목적 및	5. 정치적·영리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기능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인정되는 --
6.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거나 선량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6. ---------- 지장을 주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주는 ----------
제16조(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① ---------- 실비 및 강사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의 범위---------- ---------- --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은 계좌입금으로 한다.	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7조(보고 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보고 등) --- 제14조---------- ----------.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4호 서식)	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14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제18조(모집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제18조(모집 등) ① ---------- ---------- 각 호의

의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이상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은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해야 ----------. <후단 삭제>
1. 공개모집에 의한 사람(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	1.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2. 조례 제17조2항 1호 및 2호의 추천에 의한 사람(별지 제17호 서식의 추천서)	2.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별지 제17호서식의 추천서
② 위원은 제18조1항의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 사람 중에서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7 이내	1. ---------- 사람: ----------
2. 조례 제17조2항 1호 및 2호의 추천에 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내	2. ---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
③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 ----------.
④ 동장은 위원 등 위·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등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 보고해야 ----.

제19조(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심사위원회) ① ---- 주민자치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 ---------- --------.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 동장은 관내 기관·단체와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덕망과 식견이 있고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관내 기관·단체 및 ---------- 주민자치에 관한 ---------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⑤(생 략)	④·⑤(현행과 같음)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 개의하고---------- ---------.
제20조(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해촉) 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해촉) ① 동장은 ---------- ---------- 발급하고---------- ---------- 통지해야 ----. ----------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해촉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해촉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해촉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 ----------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위촉·해촉 관리대장--- 작성·관리해야 ----.
제21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 등의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제22조(회의소집) ① 위원장 또는 동장이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회의소집) ① ---------- 제21조----------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 - 장소 및 안건 ----------.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공인비치) 조례 제10조제6항, 제21조제2항 및 그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3조(공인비치) --- 제1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무와 그 밖의 위원회 ----------

위원회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비치---------- 관리 및 사용----------.
제24조(운영세칙)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 사항 외에 ----------.